

#### [서식 예]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# 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지방경찰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####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파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#### 1. 처분의 경위

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23:0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☆☆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서울 ○바 ○○○○호 트레일러 유조차를 알콜 농도 0.15%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였는바,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, 제1종 대형, 제1종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습니다.



#### 2. 처분의 위법

원고는 위 일시,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원고가 운전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지만, 제1종 보통 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운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 는 위 트레일러 운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.

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로는 될 수 있어도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운전면허취소통지서

1. 갑 제2호증 차량등록증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## ○ ○ 행 정 법 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①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